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차 적발에도 영업정지

- 7월 2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1회만 적발해도 영업정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7.1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절차 진행중

정부는 '26.7.28(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화)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신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함께, ②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하였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7.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7.28일 기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법제심사 중

【 바가지요금 법적제재 강화(안) 】

품목		위반사항(법령)	위반시 조치사항	
			현 행	개 선
숙박	숙박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7.14 시행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한옥 체험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 8.4 시행 예정	제재규정 부재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음식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교통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취소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자격정지 60일 3차) 자격취소

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과제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신고·공개)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 → 온라인접객대 등 신고요금 게시. 지방정부 홈페이지 공개
(제재) 업체가 ①시기별 요금 사전 미신고, 또는 ②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 제재(예: 영업정지) 부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개정)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정미현	(044-215-8570)
	복지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나운	(kny218@korea.kr)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임은정	(044-202-2855)
	생활보건팀	담당자	사무관	박서영	(shasa@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장석인	(044-203-2831)
	관광산업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수	(means0128@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나진항	(044-201-3823)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재영	(sand@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정문기	(044-201-1581)
	농촌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장규임	(muy987@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홍정미	(hjm0514@korea.kr)